**장애자 교육 시행령( IDEA) 에 의거한 장애자 교육 권리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o | |  | | | | Date Provided | |  | | |  |
|  | |  | | | |  | |  | | |  |
| **당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장애자 교육 권리 (절차적 안전 장치)에 관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 | | | | | | | | | | |
| [ ] 매년 받기로 요청했으므로 | | | | | [ ] 학부모의 요청으로 | | | |  | | |
| [ ] 최초로 전문가의 추천을 받거나/평가를 위해 학부모가 요청 | | | | | [ ] 주(State)에 첫 번째 항의 제기 | | | |  | | |
| [ ] 징계조치로 인한 반 배정 변경 | | | | | [ ] 적법 절차 심의 첫 번째 요청 | | | |  | | |
|  | | | | | | | | | | | |
| **만일 이 권리들을 이해하기 위해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나 질문이 있으면 아래로 연락하십시오:** | | | | | | | | | | | |
|  |  | | at |  | | |  | | | | |
|  |  | |  |  | | |  | | | | |
|  | Name 이름 | |  | Telephone Number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장애아 교육 서비스 수혜자들을 위해 연방과 주에서는 법으로 특별한 권리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책자에는 이 권리들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으며 부모들에게 일 년에 한 번 제공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최초로 전문가가 학생에게 장애가 있다고 판단을 해 학교에 알려 주거나, 학생의 장애 정도 평가를 학부모가 처음 요청할 때, 해당 학년 동안 주(State)의 첫 번째 항의 제기가 있을 때, 해당 학년 동안 적법 절차 심의에 대해 첫 번째 요청이 있을 때, 또는 반 배정을 바꾸는 결정이 내려졌을 때, 또는 학부모가 요청했을 때, 학부모에게 이 책자가 다시 제공되어야한다. 이 책자에는 장애아들의 교육 권리들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들어 있는데 만일 어떤 사항이건 이 권리들에 관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원할 시에는 위에 명시된 사람; 학교 장; 학교내의 특수 교육 (special education, 장애아 교육) 코디네이터; 또는 학교의 교육감에게 연락할 수 있다. 만일 이 책자가 더 필요하거나, 질문이 있거나, 회의를 요청하고 싶으면 위에 명시된 사람에게 연락하면 된다.

**prior WRITTEN notice 사전 서면 공지**

장애아 식별 , 평가, 반 배치 (정상 아동 반, 장애아 반) 또는 적절한 무상 공교육(FAPE)의 제공을 시작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해당 교육기관에서 제안하거나 거부 할 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 서면 공지를 학부모에게 해야 한다. 이 공지에는 반드시 당신에게 제공되는 모든 절차적 보호들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교육기관에서 장애아에 대한 조치를 제안하거나 거절하는 이유가 설명되어야 하며; 개별교육프로그램(IEP)팀에 의해 제안된 다른 옵션들에 대한 설명과 왜 이 옵션들은 채택되지 않았나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며; 해당 교육기관에 서장애아에 대한 조치를 제안하거나 거절하는데 사용한 모든 평가 절차 , 평가 , 기록 , 보고서, 또는 다른 요소들에 대한 설명; 특수 교육 에 대한 권리를 이해하는데 도움 을 얻을 수 있는 소스들에 대한 정보; 당신이 절차적인 보호 장치들 하에서 보호받고 있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 그리고 만일 당신에게 보낸 통지서가 평가를 위한 첫 번째 추천이 아니라면, 당신이 절차적 보호 장치에 대한 안내서를 얻을 수 있는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장애아 교육에 관한 서면 공지는 일반 대중들이 이해 할 수 있어야하며 불가능하지 않는 한 당신의 모국어나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의사 소통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만일 당신의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거나 글로 쓰여진 것을 이해하기 어려우면 당신 자녀의 교육 기관은 당신이 통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신의 모국어, 구두 또는 다른 방법으로 번역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한다; 또한 당신이 통지 내용을 이용하기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 정보가 제공되고; 이런 요구사항들이 충족되었다는 서면 증거가 있어야 한다. 만일 당신의 교육기관이 학부모들에게 이메일로 자료를 보낼 수 있으면, 이메일로 사전 서면 공지를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의 자녀가 정규적인 졸업장을 받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학교를 떠나게 되면 학교에서 당신에게 반드시 서면 공지로 더 이상 장애아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Parental consent 학부모의 동의**

당신의 교육 기관에서는 장애 아동의 초기 평가가 실시되기 전, 초기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 재평가의 일부분으로 추가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에, 당신의 서명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초기 평가 에 대한 당신의 동의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최초 제공에 대한 동의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교육 기관은 당신이 서면 동의 를 거부 한 경우 초기 평가 또는 재평가 를 실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정 및 적법 절차 청문회 에 대한 주(State)의 법적 절차를 사용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청문회 사무관이 당신의 교육 기관을 지지하면, 해당 교육 기관은 당신의 항소권을 평가할 것이며 당신과 교육기관이 동의하지 않는 한 아이는 항소에 대한 결정이 날 때 까지 현재의 교육 배치에 머물러있어야 한다. 만일 아이의 부모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초기 규정에 동의 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동의에 관한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교육 기관은 청문회 또는 중재 절차 적법 절차를 이용하여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아동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 교육기관은 아동의 필수 무상 공교육 제공을 위법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IEP 팀 회의 를 소집 하거나 자녀를 위한 개별 교육 프로그램 (IEP) 을 개발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만일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초기 규정 이후에 부모가 서면으로 동의를 취소하면

똑같이 적용되서 공공 교육기관은 사전 서면 통지를 하고 장애아 교육서비스를 중단한다. 만일 초기 서비스 제공 이후에 부모가 서면으로 동의서 취소를했을 경우,이것으로 인해 공공 기관은 아동이 특수 교육 및

해당 교육 기관은 그들이 당신의 자녀의 재평가를 위한 동의를 위해 적절한 과정을 거쳐 당신에게 요청했고 당신이 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진 않는 한 당신 자녀를 재평가 하기 전 반드시 당신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일 당신이 당신 자녀의 재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당신의 자녀의 재평가 동의 거부를 무효로 하기 위해 교육 기관은 중재 그리고/또는 공청회과정의 사용하여 아동의 재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이렇게 해서 재 평가를 하지 않을 경우 초기 평가와 마찬가지로 교육기관은 장애자 교육 시행령(IDEA)의 파트 B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재평가에 대한 당신의 동의를 얻기 위한 두 번에 걸친 시도에도 응답하지 않을 경우에, 교육 기관은 재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당신의 동의 없이도 교육기관이 기존 데이터를 당신 자녀의 평가 또는 재평가의 일부로 검사할 수 있다. 또 부모의 동의 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다른 평가나 시험은 당신의 동의 없이 당신의 자녀에게 주어질 수 있다.이 부분에 의해 요구되는 것을 제외하고 교육 기관은 모든 아이들을 위해 교육 기관 에서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나 혜택을, 장애아 부모가 장애아 교육 초기 평가에 관련된 하나의 서비스 또는 활동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거부할 수 없다.

만약 당신의 자녀가 홈 스쿨을 하거나 사비로 사립 학교에 보내고 있는 부모이며, 당신이 자녀의 초기평가 또는 재평가를 위해 서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면 동의서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해당 교육 기관에서는 동의 무효 절차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당신의 자녀에게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정보에 근거한 서면 동의나 19세(성인)가 된 해당되는 자녀의 서면 동의는, 회의에 초대된 양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불 할 책임이 있는 참여 기관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IEP 미팅을 갖기 이전에 받아야 한다. 당신의 정보에 근거한 서면 동의나 19세(성인)가 된 해당되는 자녀의 서면 동의는 전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경비를 지불할 참여 기관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IEP 미팅 이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TRANSFER OF PARENTAL RIGHTS AT AGE OF MAJORITY 성인이 된 자녀** 부모의 권리 양도

**부모의 성인이 된 자녀에 대한 권리 양도**

장애를 가진 자녀가 모든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이 주법에 따라 성인이 되면(19살) (주 법률에 의해 무능력자로 분류된 장애를 가진 아동은 제외됨) 해당 교육기관에서는 이 파트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통지를 아동과 부모들에게 하여야만 한다.; 장애자 교육 시행령(IDEA) Part B에 의거하여 부모에게 허용된 모든 권리들은 아이에게 양도된다; IDEA(장애자 교육 시행령)Part B에 의거하여 부모에게 허용된 모든 권리들은 주 또는 지역의 성인 또는 청소년 감옥에 감금된 아이들에게 양도된다; 그리고 그 권리들이 양도되었을 때, 해당 기간은 해당 아동과 부모에게 권리의 양도에 관해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독립 교육 평가**

만일 당신이 해당 교육기관에서 실시한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공공 비용으로 독립 교육 평가기관에 평가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교육기관에서는 자신의 평가가 적절한지 증명하기 위해 적법 절차 심리를 요청할 수도 있다. 만일 최종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의 평가가 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당신 자녀가 여전히 독립된 기관의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공공 비용은 사용할 수 없다. 만일 당신이 개인 비용으로 독립된 교육 평가를 받았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당신의 교육 기관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 (기관의 기준에 맞는다면). 어떤 결정도 무상 공교육 규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정은 적법 절차 심의회의 증거로 제출될 수 있다. 만일 적법 절차 심의회 담당자가 심의과정으로 독립 교육 평가를 요청하면, 그 평가의 비용을 당신이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각 교육 기관은 당신의 요청이 있으면 독립 교육 평가가 어디서 실시되었으며 그 평가의 범위에 관한 정보들을 제공할 것이다. 공공의 비용으로 독립 교육 평가가 행해질 때에는, 평가의 장소와 평가자의 자격을 포함하여 평가가 얻어진 기준이 교육기관에서 평가가 이루어질 때와 동일한 기준이어야만 한다. 학부모는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는 평가가 공립 기관에서 행해질 때 마다 공공 비용으로 한 번의 독립 교육 평가를 가질 권리가 있다.

**주(State) 정부 항의와 적법 절차 심의 과정의 차이**

장애자 교육 시행령(IDEA) Part B의 규정은 주정부 항의와 적법 절차 심리에 분리된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아래에 설명된 바와 같이, 모든 개인이나 단체는 교육기관, SDE, 또는 다른 공립 기관이 Part B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생각할 경우 주(State)정부에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학부모 또는 교육 기관만이 장애자 판별, 평가, 또는 장애아동의 교육 반 배치, 또는 아동의 무상 공교육 제공을 시작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제안 또는 거부에 관한 적법 절차 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SDE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기간이 적법적으로 연장되지 않는 한, 달력 날짜로 60일 이내에 주 정부에 항의된 사항을 해결하여야 하고 편파성이 없는 적법 절차 심리 담당관은 적법 절차 심의를 들어야 하며 (만약 중재를 통하거나 해결회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았다면) , 심의 담당관이 당신의 요청 또는 교육 기관의 요청에 의해 특별한 기간 연장을 허락 받지 않은 이상, 해결 기간(resolution period)이 끝난 후 달력 날짜로 45일 이내 서면 결정을 발행해야 한다.

**주(State) 항의 절차**

개인이나 단체는 학교 시스템이 장애자 교육 시행령(IDEA) 또는 34 CFR Part 300 (장애아 교육을 위한 연방 정부의 주정부 보조 규정) 그리고 그 내용에 근거한 사실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서명된 항의서를 제출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위반 행위가 항의서 제출시 보다 일년 이내에 발생했어야 하고, 항의의 주장에 관한 추가 정보는 구두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주정부 에서는 항의서에 기술된 각각의 위반 주장 사항에 대해 사실성이 있는지를 포함한 결론과 최종 결정의 이유을 설명하고 있는 서면 결정서를 달력 날짜로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이 시간의 연장은 특정한 항의를 고려하는데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때에만 한정된다; 그리고 최종 결정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만약 필요하다면 기술적인 보조 활동, 협상, 준수를 위한 시정 조치들이 적용될 수 있다. 만일 부모나 교육 기관이 중재나 주 항의 를 해결하기 위해 기간 연장에 동의 한다면 연장이 허용된다. 교육 기관은 항의 의혹에 응할 것이며, 교육 기관의 재량에 따라, 항의 해결을 위한 제안을 할 수 있다. SDE의 특수 교육 서비스 분과 (SES)에 의해 독립적인 현장 조사가 행해질 것이다.

만일 요청을 받는다면, SDE의 특수 교육 서비스 분과 (SES)는 주정부 항의 제기를 위한 샘플 양식을 당신에게 제공할 것이다.

당신은 샘플 양식을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당신의 항의서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 기관이 장애자 교육 시행령(IDEA) Part B의 필수요구 사항이나 이 책자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위반하였다는 진술; (2) 위의 법령이나 이 책자의 내용에 근거한 사실들; (3) 해당 항의를 제기하는 사람의 서명과 연락정보; 그리고 (4) 주장된 위반 사항이 특정 아동에 대한 것일 경우 : (a) 해당 아동 이름과 거주지 주소; (b) 해당 아동의 학교 이름; (c) 집이 없이 떠돌아 다니는 아동이나 청소년 (McKinney-Vento Homeless Assistance Act (42 U.S.C. 11434a(2)의 홈리스 조항 725(2))의 의미에서) 의 가능한 연락처, 다니는 학교 이름; (d) 해당 학생의 장애의 성격과 관련 사실; 그리고 (e ) 항의가 제기 되었을 당시 당사자에게 알려진 ,제시된 가능한 문제의 해결 방안

항의를 하는 당사자들은 항의서를 SDE의 분과인 SES에 보내야 한다. 항의자는 항의를 SDE에 제기함과 동시에 항의의 복사본을 지방 교육청(LEA)이나 해당 아동이 속하는 공공 기관에 전달 하여야한다. 만일 항의서를 검토한 후, SES에서 그 항의서가 모든 필요한 정보와 서명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SES가 그 항의서를 접수 한 날 (휴일이 아닌 일하는 날) 로 부터 60일 타임라인이 시작된다.서명은 은행 수표나 계약서 같은 법적 서류에 서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명이 필요하다. 자신의 이름을 싸인 할 수 없는 사람은 예외가 적용된다.

만일 서면 항의가 적법 절차 심리의 대상이거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이 절차 심리의 일부인 복합적인 이슈를 포함하고 있으면, 주는 심리의 결론 때 까지 적법 절차 심의회에서 언급 되고 있는 항의의 일부를 유보해야 한다.

하지만 적법 과정 액션의 일환이 아닌 항의내의 다른 문제들은 정해진 기간 이내에 규정된 과정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이 섹션 아래에 제출된 항의에서 제기 된 문제가 전에 동일한 항의자가 관련된 적법 절차 심리에서 결정된 경우, 그 적법 절차 심의회 결정이 이 문제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리고 SES는 그 효력에 대해 항의한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공 기관의 적법 절차 심의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는 SES에 의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주의 중재 과정**

당신이 주(State)에 항의를 제출하였거나 또는 적법 과정 심의의 신청 여부한 것과 상관없이 당신은 장애자 교육 시행령(IDEA)에 따라 교육 기관과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SDE에 의한 무료 자발적 중재가 준비될 것이다.효과적인 중재 기술로 훈련된 공정한 자격의 중재자가 돌아가며 선정되어 공급되며 각 중재 세션은 분쟁 당사자에게 시기 적절하고 편리한 장소에서 열릴 것이다. SDE는 자격있는 중재자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중재자들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관련된 법률 및 규정들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중재자는 SDE의 직원이나 당신의 자녀를 돌보고 있거나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기관의 고용인이 아니어야 하고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인 이해 관계에 있지 않아야 한다.당신은 다른 권리들의 거절이나 지연 없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합의에 도달하면, 해당 부모와 교육기관을 결속할 권한을 가진 교육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면 서류로 합의를 표명하게 될 것이다.모든 관계자들은 중재과정의 시작에 중재 협의의 비밀 보장과 이 협의들이 이후의 적법 과정 심의나 민사소송의 증거로 쓰여지지 않는다는 보장을 위해 비밀유지 맹세에 서명한다.그 중재안은 관할 주 법원이나 미국의 지방 법원에서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당신이 중재 과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다면 교육기관은 당신에게 편리한 위치와 시간에 제 3자와 만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제 3자가 중재의 혜택에 대해 설명하고 중재안을 사용할 것을 권유하게 될 것이다.

**due process hearing Procedures 적법 절차 심의 과정**

당신은 장애 판결, 장애 정도 평가, 교육 반 배치 또는 적절한 무상 공교육의 제공을 시작하거나 변경하는 교육 기관의 제안이나 거부에 대한 적법 절차 심의회 를 요청할 수있다. 당신이 심의회를 요청했다면, 당신이나 당신의 변호사는 서면 요청서(반드시 비밀이 유지되어야 함)의 복사본을 상대방과 SDE에 제공하여야 한다. 요청을 하면 SDE의 특수 교육 서비스 섹션(SES)은 당신에게 적법 절차 심의 요청을 위한 샘플 양식을 제공할 것이다.

당신은 샘플 양식을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아동의 이름; (2) 해당 아동의 거주지 주소 또는 집이 없이 떠돌아 다니는 아이의 경우에 연락 가능한 연락처; (3) 해당 아동의 학교 이름; (4) 심의회 요청의 근거인 의심되는 행동에 대해 부모나 교육 기관이 알고 있거나 알고 있었어야 하는 날짜로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해당 문제와 관련된 사실을 포함한 문제의 성격에 대한 설명; 그리고 (5) 당신이 심의를 요청하는 시기에 당신이 알고 있는 한도내에서 제시된 문제 해결안.

서면 요청의 근거가 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교육기관이 오도해 부모가 심의회 요청을 못했을 경우; 또는 이 사항에 대해서 부모에게 제공되어야하는 정보를 교육 기관이 쥐고 주지 않을 때, 정해진 해결기간(timeline)은 그 부모에게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당신 (또는 당신의 변호사), 또는 교육 기관이 상기 사항들 모두를 포함한 적법 과정 심의 요청을 하기 전에는 당신 또는 교육 기관은 적법 절차 심의를 가질 수 없다.

적법 과정 심리 요청을 받은 후 그리고 SES에서 요청서에 모든 필요한 정보가 있고 서명을 하였다고 판단하면, 적법 과정 심의는 시작되고 접수된 날로부터 정해진 해결기간이 시작된다. 은행 수표나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과 같은 법적인 서류에 서명을 하는 것과 동일하게 서명이 필요하다. 다만, 본인의 이름을 싸인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예외가 적용된다.

심의 요청을 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서면으로 심의 요청되지 않은 이슈를 심의회장에서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당신이 정보를 요청하거나 또는 당신이나 해당 교육 기관이 심의를 요청하였다면, 해당 교육 기관은 당신에게 지역 내에서 무료 또는 저 경비의 합법적이며 적절한 가능한 서비스를 알려주어야만 한다.

적법 과정 심의가 진행되기 위해서 그 요청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고려되어야만 한다. 적법 절차 항의를 받은 상대(당신이나 교육 기관)가 항의서를 받은후 15일 이내에 청문회 담당자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항의서가 요건 충족이 되지 않았다고 통보하지 않는 한, 적법 절차의 요청은 상기 필요 요건들이 충족되었다고 고려될 것이다. 항의 상대방이 적법 절차 요청 요건 충족이 되지 않았다고 통보를 하면 통보를 받은지 달력 날짜로 5일 이내에, 심의 담당자는 적법 절차 요청이 그 필수 사항들을 충족하고 있는지 결정하여 당신이나 교육 기관에 서면으로 즉시 통보해야만 한다.

당신이나 해당 교육 기관은 상대방이 서면으로 된 변경사항을 허락하고 협상을 통해 적법 절차 심의 요구가 해결되는 기회가 주어질 때에만 심의 요청을 변경할 수있으며, 늦어도 적법 심의가 시작되기 5일 전 까지 심의 담당자는 변경 허가를 승인하게 된다. 항의를 한 집단이 적법 심의 요청을 변경하면, 협상 모임과 협상 기간은 수정 요청이 접수된 그 날부터 다시 시작된다.

만일 이전에 행해지지 않았다면 교육 기관은 심의 요청 내용에 대한 답들이 설명된 서면 통보를,당신의 심의 요청서를 받은 후 달력 날짜로 10일 이내에, 당신에게 전달 할 것이다. 이 답들에는 반드시 적법 심의 요청에서 제기된 조치에 대한 교육 기관의 제안 또는 거부 이유에 대한 설명, 해당 아동의 IEP 팀이 고려하는 다른 옵션에 대한 설명과 이 옵션들이 거부된 이유에 대한 설명, 각 평가 과정, 평가, 기록, 또는 조치를 제안하거나 거절한 근거로 교육 기관이 사용한 보고서, 교육기관의 제안 또는 거절된 조치와 관련된 다른 요소들의 설명들을 포함해야 한다.하지만, 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해당 교육 기관이 적법 절차 요청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막아주지는 않는다.

만일 해당 교육 기관이 적법 절차 심의 요청을 제기하였으면, 당신은 그 요청을 받고 달력 날짜로 10일 이내에 교육기관에 구체적으로 설명한 항의 문제에 대한 응답을 해당 교육 기관으로 보내야 한다.

심의에 우선하여, 해당 교육기관은 학부모의 심의 요청을 받은 달력 날짜15일 이내에 부모들과 관련 멤버 또는 IEP 팀 멤버들 (해당 교육 기관과 부모에 의해 결정)과의 회의를 소집할 것이다.이 회의에는 교육 기관을 대신해 결정할 권한이 있는 멤버와 서면 심의 요청의 사실들을 식별할 수 있는 구체적 지식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부모가 변호사를 동반하지 않는다면 해당 교육 기관도 담당 변호사를 참여시키지 않을 것이다. 해당 아동의 부모들이 본인들의 심의 이슈와 심의 요청의 기초를 형성하는 사실들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이 모임의 목표이다. 해당 교육 기관은, 부모들과 교육 기관이 서면으로 이 회의의 보류나 중재 과정을 사용하는데 동의 하지 않는 한, 심의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회(부모들과 협상회의)를 갖는다. 만일 해결책이 협상 모임 또는 중재 과정에서 정해지면, 해당 관계자들은 교육 기관이 조치를 취하는 데 권한이 있는 해당 교육 기관의 대표와 부모 모두가 서명을 한 법적 합의서를 발효시킬 것이다.이 합의는 관할 주 법원 어디나, 미국 의 지방 법원에서 집행 할 수있다.

관계자들이 합의를 발효할 경우, 한 관계자가 계약의 발효 3일(일하는 날짜로) 이내에 이 계약을 무효로 할 수있다. 교육 기관이 심의에 대한 서명 요청을 받은 30일 이내에, 심의 이슈들에 대한 부모들의 만족을 얻도록 해결되지 않았다면, 심의회가 열릴 수 있으며 모든 적용 가능한 정해진 심의 기간이 시작될 것이다. 해당 심의 담당자가 어느측의 관계자로의 요청에 의해 특별히 연장을 해주지 않는 한 , 최종 심의 결정은 심의 일정 시작 후 달력 날짜로 45일 이내에 ( 즉, 30일간의 이슈 협상이 만료된 후) 이루어질 것이다. 결정의 복사본은 각 관계자들에게 발송된다.

당신과 교육 기관 양쪽 모두 해결 과정을 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거나 중재 사용에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부모가 해결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면, 해당 부모가 그 모임에 참여를 동의 할 때 까지 적법 절차 심의와 협상 과정을 위한 일정이 연기될 것이다. 적절한 시도와 그 시도들을 문서화 한 후에, 해당 교육 기관이 부모의 협상 모임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30일 협상 기간의 마지막에 해당 교육 기관은 심의 담당자에게 부모의 적법 절차 심의 요청 취소를 요청할 수있다. 이런 노력들의 문서에는, 상호가 동의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려고 했던 해당 교육 기관의 시도가, 예를 들어 전화 통화나 통화 시도 그리고 통화에 대한 결과에 대한 자세한 기록; 관계자가 보낸 복사본과 그에 대해 받은 반응들; 그리고 가정이나 직장으로 방문했고 그 결과에 대한 자세한 기록;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 기관이 해당 부모의 적법 절차 요청을 받은 후 달력 날짜로 15일 이내에 협상 모임을 가지는 것에 실패하거나 협상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면, 해당 부모는 청문 담당자에게 달력 날짜로 45일 적법 절차 심의 일정의 시작을 요청할 수 있다.

부모와 교육 기관이 서면으로 해결 모임을 갖지 않는 것에 동의하면, 45일 적법 심리 일정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 또한 중재 또는 협상 모임 시작된 후 30일의 해결 기간이 끝나기 전, 부모와 교육 기관이 가능한 합의가 없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동의하면, 달력 날짜로 45일 적법 심리 과정 기간은 그 다음 날 시작 된다. 부모와 교육 기관이 중재 과정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30일 간의 해결 기간 마지막에, 양측이 합의를 할 때까지 중재가 계속 되는 것을 서면으로 동의할 수있다. 어떤측이건 중재 과정에서 철회하면, 45일 적법 과정 심의 기간은 그 다음 날 시작된다.

최소한 심의 담당자는 주 교육 기관의 직원이 아니어야 하고 교육에 참여하고 있거나 해당 아동을 돌보고 있는 지역 교육 기관의 직원이 아니어야 하며 개인적으로 또는 직업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심의 과정에서 에서 자신들의 객관성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어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본인이 심의 과정 담당자의 자격으로 교육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기 때문에 심의 과정을 담당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지식과 수행 능력이 있어야 한다: 장애자 교육 시행령(IDEA) 의 규정들을 이해 할 것, IDEA에 관한 연방과 주의 규정을 이해할 것, 연방과 주 법정에 의한 법적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적절하고 보편적으로 법을 적용하여 심의를 행할 것; 적절하고 보편적으로 법을 적용하여 결정을 내리고 문서로 작성하는 것..

각 교육 기관은 적법 절차 심리 담당자로 일한 사람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리스트에는 그 사람들 각자에 대한 자격이 명시 되어있어야 한다.

청문회에 임하는 양측은모두 주법으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변호가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변호사나 장애아들의 문제들에 관련하여 전문 지식이 있거나 훈련을 받은 사람과 같이 심의(청문회)에 가서: 증거를 제시하고 대응하고, 검증, 증인 출석 강제 요구; 청문회가 열리기 최소 5일 전에 상대에게 알려지지 않은 증거는 청문회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 청문회 서면 또는 말로한 전자 기록의 취득, 또는 해당 부모님들의 경우 청문회에서 논의 된 사실들과 결정들을 저장한 전자 화일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추가하여, 당신은 해당 자녀를 동반할 권리; 일반인들에게 공개 청문회를 열 권리; 비용이 들지 않고 본인에게 편리한 장소와 시간에청문회를 열리게 할 권리 등이 있다. 최소한 청문회가 열리기 5일 전에 관계 집단 각자는 상대방 모두에게 해당 관계자가 청문회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당사자들의 평가에 근거한 추천사항들과 그 날 완료된 모든 평가를 공개해야 한다. 청문회 담당관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청문회에서 관련된 평가 또는 추천사항들을 청문회에서 처음 알리는 것을 제지 할 수 있다.

**civil action**

적법 과정 청문회의 발견과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는 측은 관할 주 법정이나 미국의 지방 법원에 논쟁의 양에 상관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 할 권리를 갖는다. 그 경우를 제외하고 심의관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결과에 대해 불만족하는 상대는 청문 담당자의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에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의향을 청문의 모든 관계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민사 소송은 관할 법정에 민사 소송 의향을 통보한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해당 아동이 무상 공립 교육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청문 담당관의 결정은 실질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절차적 부적절이, 적절한 공교육을 받을 수있는 아동의 권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 자녀의 적절한 무상 공교육의 제공에 관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있는 부모의 기회가 중대한 방해를 받았을 경우, 또는 교육 혜택의 박탈의 원인이 될 때에만, 절차 위반 문제와 관련하여 청문 담당관은 해당 아동이 절차 위반으로 무상 공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결정할 수도 있다.

상기의 규정 중 어느것도 청문 담당자가 교육 기관에게 절차적 보호 요구 사항을 준수하라는 명령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상기의 규정 중 어느 것도 부모가 이미 요청된 적법 절차 심의 요구와 관련이 없는 이슈에 대해 별도로 적법 심의 요청을 제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해석될 수 없다.

**child’s status during proceedings 진행 과정 중 아동의 상태**

당신과 주 또는 당신과 아이의 교육 기관이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적법 청문회 또는 사법 절차의 해결기간이 계류되는 동안 해당 아동은 현재의 교육 배치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만일 청문 담당관과 부모가 학생의 배치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에 동의하면, 그 배치는 주와 부모 사이의 합의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공립학교의 초기 입학허가 지원서와 관련된 청문회라면, 아동은 부모의 동의하에 모든 절차들이 완료될 때 까지 공립학교에 배치되어야한다. 아동이 Part C에서 Part B로 옮겨가는 중이고 아동이 3살이 되어 더 이상 Part C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아 Part B의 초기 서비스를 위한 지원서와 관련되어 있다면, 교육 기관은 아동이 받고 있는 Part C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할 필요가 없다. 해당 아동이 Part B 아래에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경우, 교육 기관은 논란이 되지 않고 있는 해당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하지만, 부모가 징계 처벌과 관련하여 적법 심의를 요청하였다면, 부모와 교육 기관이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청문 담당자의 결정이 내리는 동안 또는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대안 학교 세팅에 남아있게 배치된다. 징계 문제들에 관한 즉결 청문회 요청은 20일 이내의 School days에 요청되어야 하며 청문회 담당관은 청문회 후 10일 School days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State Enforcement Mechanisms. 주의 집행 방법**

중재나 해결 회의의 결과로 도달된 서면 합의의 집행을 위해, 주 교육 기관(SEA)은 그 합의의 집행을 위해 주의 다른 집행 방법을, 그 방법들의 사용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당사자가 관할 주 법정 또는 미국 지역 법정 내에서 서면 합의의 집행을 찾는 권리를 지연 또는 거부하지 않는 경우에, 허용한다.

**award of attorneys**’ **fees 승소한 경우 변호사 비용 지불 받는 것**

IDEA Part B 에 해당되는 법적 조치나 소송 절차에서, 법정은 적절한 변호사 수수료를 장애아의 부모가 승소했을 경우 부모에게 수여할 수 있다; 사소하고, 이유가 없고, 근거가 없는 소송을 한 (또는 해당 소송이 사소하고, 이유가 없고, 근거가 없는 소송으로 확실히 판정된 후에도 소송을 계속 제기하는 ) 부모의 변호사에 주나 교육 기관이 승소했을 경우; 또는 만일 부모의 요청 또는 후속 소송의 원인이, 단지 상대를 괴롭히기 위해서, 불필요한 지연을 야기하기 위해, 소송 비용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키는 것들과 같은 부적절한 목적이었을 경우에 주나 지역 교육 기관이 승소하면 주 또는 지역 교육 기관에게 수여할 수 있다. 수수료는 법적 조치나 소송 절차가 제공된 서비스의 종류와 질에 근거해, 커뮤니티 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수준으로 정해진다.

부모에게 서면으로 합의 제안이 법정 심리10일 전에 부모에게 제출되었고, 부모가 10일 이내에 그 합의 제안을 받아 들이지 않았을 경우, 법정에서 심리 결론이 합의 제안 보다 부모에게 더 유리하지 않다고 심리 담당자나 법정이 판단한 경우 법정은 변호사 비용을 수여하지 않고 합의서를 받은 후의 관련 비용 또한 상환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 미팅이 청문 담당자의 결정 또는 법적인 조치의 결과로 소집된 것이 아니라면 IEP 팀미팅 참여에 관한 수수료 또한 지불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부모가 승소하고 합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 충분히 이유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면 부모에게 변호사 수수료와 관련 비용이 수여될 수도 있다. 해결 회의(resolution meeting)는 행정적인 심리 또는변호사 수수료 지원을 목적으로 한 법정 소송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만일 부모나 부모의 변호사가 법정심리나 소송 절차중 논쟁의 최종 결정을 적절한 이유 없이 연장해서; 소송의 성격을 고려해볼 때 비슷한 능력, 평판,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비슷한 사건을 담당한 것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거나; 또는 부모를 대변하는 변호사가 적법 절차 심리 요청 동안 해당 교육 기관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변호사 수수료가 과도하게 나왔을 경우 변호사 비용이 적게 수여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만일 법정이 해당 주 또는 지역 교육 기관이 법적 심리나 소송 재판의 최종 결정을 이유 없이 지연시키거나 이 규정들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발생한 모든 변호사 비용이 수여될 수 있다.

**access to records 교육 기록 관람 허용**

당신 자녀의 교육 기관은, 당신 자녀에 관해 수집되어 보관되어, IDEA 의 Part B 아래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이 사용하는 당신 자녀에 관한 모든 교육 기록을 조사하고 검토하는 것을 당신에게 허용하여야 한다. 당신 자녀의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당신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불필요한 지연없이 개인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미팅; 장애 판별, 평가, 반 배치, 또는 적절한 무상 공교육 제공에 대한 법정 심리(hearing), 또는 문제 해결 세션이 열리기 이전에 그리고 요청된 후 45일 이내에 요청에 응해야 한다. 당신 자녀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검토할 수 있는 당신의 권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당신이 자녀의 기록에 대한 설명과 해석을 정당하게 요구했을 때 참여 기관이 반응해야 할 권리; 당신의 대리인이 조사와 검토를 할 수 있는 권리; 또한 교육 기관에 자녀 교육 자료의 사본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만일 교육 기관이 사본들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당신이 자녀의 기록을 조사하고 검토하는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을 방해한 것이 된다. 장애아 학생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학부모가 자녀 교육자료 정보를 검색하는데 드는 비용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나, 사본을 요구할 경우는 만일 그 비용이 학부모가 그 기록들을 조사하고 검토하는 권리 행사를 실질적인 방해를 하지 않을 정도라면 제공되는 기록의 사본에 대한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당신이 보호자 신분, 또는 별거와 이혼 같은 문제를 관리하는 주의 법에 의해 권한을 가질 수 없다고 판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교육기관은 당신이 자녀의 기록들을 조사하고 검토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할 것이다. 만일 교육 기록에 한 명 이상의 학생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면, 당신의 상황이나 통보 받은 특정한 정보와 관련된 정보만을 검토 해야 한다. 참여교육기관은, 학부모가 요청하면, 교육기관이 수집하고, 보관하고 있는 교육 기록들의 종류와 위치, 또는 참여 기관에 의해 사용된 기록들의 리스트를 학부모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참여교육기관은 그들이 수집, 보관, 그리고 사용한 ( 참여 기관의 권한을 가진 직원과 부모의 접근은 제외) 교육 기록에 접근이 허용된 사람들의 이름, 기록 열람 날자, 기록들의 검토 권한을 받은 목적을 기록하여 가지고 있어야 한다.

**RIGHTS FOR CHILDREN 아동들의 권리**

교육 기관은 기록들과 관련되어 부모들에게 허용되는 것들과 유사한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해당 아동의 나이와 유형 그리고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해당 아동에게 허용하여야 한다. 장애자 교육 시행령( IDEA)에서 부모의 권한이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나이 (19세)에 자녀에게 양도됨에도 불구하고, 가족 교육 권리 및 사생활에 관한 법령 (FERPA) 34 CFR Part 99 에 의거해 교육 기록에 관한 부모의 권리는 아이가 18세가 되었을 때 아이에게 양도 된다.

**CONSENT FOR DISCLOSURE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개인 식별 정보 공개 동의**

참여교육기관의 담당자가 아닌 관계자들 장애아 학생의 개인 식별 정보를 보려면 공개되기 전에 당신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아래에 기술된 예외적인 경우외에는, 장애자 교육 시행령( IDEA) Part B 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위해 참여교육 기관의 담당자들이 개인 식별 정보를 열람할 때에는 당신의 사전 동의가 없어도 된다.

19세가 된 수혜 아동의 경우 전환 지원 (transition services) 을 제공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는 기관의 담당자들이 개인 식별 정보를 열람할 경우 당신이나 장애아 자녀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만일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거주지의 지방 교육청(LEA)에 속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다닐 예정이면, 자녀의 개인적인 식별 정보가 사립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LEA의 담당자와 당신이 거주하고 있는 LEA내의 담당자 사이에 공개되기 전에 당신의 동의를 먼저 얻어야 한다..

**amendment of records at parent**’**s request 부모의 요청에 따른 기록 수정**

장애자 교육 시행령( IDEA) Part B에 의거해 수집, 보관, 사용된 자녀의 교육 기록들의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잘못되었거나 아동의 다른 권리들이나 사생활을 침해하였다고 여기면,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해당 교육 기관에 정보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참여교육기관은 요청을 받은 때로 부터 적절한 기간 이내에 당신의 요청에 의해 정보를 수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일 참여 기관이 당신이 요구한 정보 수정을 거부하기로 결정하면, 거부되었다는 사실과 이것에 대해 당신이 법정 심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참여교육기관은 부모가, 학생의 기록이 정확하고 잘못되지 않았으며 또한 사생활 또는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족 교육 권리 및 사생활에 관한 법령 (FERPA)에 부합하는 법정심리를 가질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 기록이 부정확하고 잘못 되었으며 사생활의 위배 또는 아동의 다른 권리들을 위배하였다고 법정 심리에서 결정이 되었다면 이에 따라, 참여 기관은 정보를 수정하고 당신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정 심리에서 학생의 정보가 정확하고, 잘못되지 않았으며 사생활이나 다른 권리들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었다면, 참여 기관은 당신에게 당신 자녀의 정보에 코멘트를 적거나 참여 기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명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기록 또는 논쟁이 되었던 부분이 참여 교육기관에 의해 보관되는 한 기록에 첨부된 어떤 설명이라도 기록의 일부로 교육기관에 보관되어야한다. 기록들 또는 논쟁이 되는 부분이 참여 기관에 의해 상대방에게 공개가 되었을 경우에는반드시 그에 대한 설명도 그 상대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DESTRUCTION OF INFORMATION 정보의 파기**

참여교육기관은 장애자 교육 시행령( IDEA) Part B에 의거해 수집, 보관, 사용된 자녀의 교육 기록들이 당신의 자녀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당신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 정보는 당신의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파기 되어야 한다. 하지만 학생 이름, 주소, 전화번호, 성적, 출석 기록, 수강한 수업, 이수한 과정과 이수년도등은 기간의 제한 없이 유지될 것이다. 정보를 파기할 때는 학생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CHILDREN WITH DISABILITIES ENROLLED BY THEIR PARENTS IN PRIVATE SCHOOLS WHEN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IS AT ISSUE**

**무상 공립 교육이 제공될 때 부모에 의해 장애 아동이 사립학교에 등록하는 것**

장애자 교육 시행령( IDEA) Part B에 의하면, 만약 지방교육청(LEA)이 당신 자녀가 무상 공교육(FAPE)을 받을 수 있다고 승인하고 당신이 자녀를 사립학교나 기관에 넣기를 원하면 장애아 교육및 관련 비용을 지방교육청(LEA)이 지불하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립 학교가 있는 지역내의 공립 기관은 그들의 부모에 의해 사립 학교에 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Part B 제안 아래 그들의 필요가 설명되어 있는 바, 당신의 자녀를 인구에 포함시켜야만 한다. 자녀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이용 가능성과 재정적인 환불에 대한 질문들과 관련하여 생긴 부모와 공립 기관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적법한 절차에 대한 법정실리를 요구할 수있다. 자녀가 공립 기관에서 장애아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이전에 받은적이 있는데, 그 공립 기관의 동의나 추천을 받지 않고 자녀를 사립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에 입학시켰을 경우, 사립 시설에 등록하기 이전에 적시에 해당 공립기관이 장애아동을 위해 가능한 무상 공립 교육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 법정 또는 법정심리에서 밝혀지면 그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다.

부모가 해당 아동을 공립 기관으로부터 빼내기 전에, 가장 최근의 IEP 미팅에 참여했지만, 공립 기관에서 자녀에게 제안한 무상 공립 교육을 거부하고 그들의 자녀를 공공 비용으로 사립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그들의 의향을 IEP 팀에 통지하지 않거나; 자녀를 공립 기간으로부터 빼내기 최소한 10일의 일하는 날들(일하는 날에 포함된 공휴일 포함) 이전에 해당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된 배치를 거부한다는 것을 공립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을 때; 부모가 자녀를 빼기 이전, 공립 기관이 부모에게 그 자녀를 평가하겠다는 의향(평가의 목적이 있는 진술서를 포함한 적절하고 이유가 있는)을 통지 했으나, 그 부모는 그 평가에 자녀를 참여 시키지 않았을 때; 또는 부모가 취한 행위가 이유가 없다고 사법적으로 판단되면; 환불액은 삭감 또는 거부된다. **예외**: 만일 학교가 부모가 이와 같은 통보를 받는 것을 저지하였고, 해당 부모가 이 책자를 받지 못했거나 이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자녀에게 신체적 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경우; 영어를 쓰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에게 영어로 된 통지를 하였을경우, 자녀에게 심각한 정신적 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경우; 재판 판사나 법정 심리 담당관은 경비 삭감이나 환불 거부를 할수 없다고 판정 할 수도 있다.

**DISCIPLINE 훈육**

## 

**Authority of School Personnel. 학교 담당자의 권한**

학교 담당자는 이 섹션의 다른 규정들과 맞추어, 학생 행동 규정을 위배한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반 배치 변경을 결정할 때 각각의 경우에 존재하는 특이한 상황들을 고려할 것이다.

이 섹션하에 있는 학교 담당자는 학생 행동 규정을 위반한 장애를 가진 아동을 빼내어 연속해 학기 중 10일(장애가 없는 아이에게는 적용되는 것과 같다)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임시 교육 환경, 다른 세팅에 배치하거나또는 정학 처분을 할 수도 있으며, 또 다시 잘못된 행동으로 규정을 위반하면 다시 학생을 교실에서 빼내어(제제 기간이 끝나면 원래 반으로 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은 10일 이내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장애를 가진 학생이 같은 학기 내에 현재 교실로부터 10일 동안 삐져 나오게 되면 이 기간동안 교육 기관은 학생에게 장애아 서비스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아동은 일반적인 교육 커리큘럼에 계속하여 참여하고, 비록 다른 세팅에 있더라도 그 아동의 개별교육 프로그램(IEP)에서 설정된 교육 목적을 따를 수 있고, 위반행동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고안된 적절하고, 기능적인 행동 평가, 행동 개입 서비스 및 계획 수정 등 계속된 교육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학기중 10일이 넘게 처벌로 인한 반에서 빠져 나와 있을 경우 학교 규정 위반으로 인한 행동이 해당 아동의 장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결정되면 , 학교 담장자는 그 아동이 계속해서 장애 교육 서비스를 받는 것을 제외하고, 장애가 없는아이들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방법과 기간의 관련 훈육 과정을 장애아 학생에게 적용할 것이다. 장애 교육 서비스는 임시 대안 교육환경 내에서 제공될 것이다.

교육 기관은 장애를 가진 아동이, 같은 학년 중 10일이나 그이하의 기간 동안 지금의 학급으로부터 다른 곳에 배치되면, 같은 위반 행위로 자기 학급에서 다른 곳에 배치된 장애가 없는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만일 장애아 학생이 학년중 10일간 학급에서 철수되었을 때 새로운 위반으로 제제 기간이 10일이 넘지 않고 반 배치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장애를 가진 아동이 동일 학기 중 지금의 배치로부터 철수된 후, 학교 담당자는 최소한 한 명의 해당 아동 선생님과 협의해서 비록 다른 세팅에서라도 해당 아동의 IEP 설정 목적과 부합하는 일반 교육 커리큘럼에 계속해서 참여하게 한다.

만일 철수가 반 배치의 변화를 가져오면, 해당 아동의 IEP 팀이 적절한 서비스를 결정한다.

**Change of Placement Because of Disciplinary Removals. 징계로 인한 반 배치의 변화**

해당 아동의 IEP 팀이 서비스를 위한 임시 대안 교육 세팅을 결정한다해당 장애아동을 현 교육 배정에서 철수시키는 목적으로 인해 , 반 일 이상의 부분 수업을 포함하여 10일 이상 철수가 연속되거나 또는 학년중 총 10일 이상 동안 연속해서 철수 되었기 때문에, 연속된 철수의 원인이 된 이전의 잘못 된 행동과 이후에도 유사한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해당 아동이 철수된 총 시간과 상호 유사한 철수 때문에, 패턴이 형성된 연속된 철수들로 인해 현 교육 배치로부터 변화가 생긴다. 교육기관(최소 한명의 관리자와 학생의 특수 교육 선생)은철수의 패턴이 배치의 변화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결정은 사법 처리와 적법 절차 심의과정을 통해 검토 될 수있다.

Notification통지*.* 학생 행동 규정의 위반으로 인해 장애를 가진 아동의 반 배치 변화를 일으켜 철수 시키기로 결정된 날, 해당 교육 기관은 그 결정을 반드시 부모에게 알려야 하며, 특수 교육 권리의 사본을 부모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Manifestation Determination*. 결정의 표시*

1. 학생 행동 규정 위반으로 인한 장애를 가진 아동의 배치변화 결정 10일이내에 (학교 다니는 날로), 부모와, 아동의IEP 팀의 관계자들(부모와 교육기관에의해 결정됨)은 학생 기록에 있는 모든 관련 정보, 해당 아동의 IEP, 교사의 관찰, 문제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가 직접적이고 연속적으로 아동의 장애와 관련있는지, 또는 문제의 행위가 교육 기관의 잘못 된 IEP 적용의 직접적인 결과인지, 결정하기 위해 부모가 제공한 관련 정보 사항 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2. 교육 당국, 부모 그리고 해당 아동의 IEP 팀과 관련된 멤버들은 조건들이 해당이 되면 학생의 행위가 학생의 장애의 징후로 부터 온 것이라고 결정되어야만 한다.

3. 교육 기관, 부모 그리고 해당 아동의 IEP 팀의 관계자들이 IEP 실행이 실패했다고 결정하면, 교육 기관은 반드시 이 부족함들을 구제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Determination that Behavior was a Manifestation*.* 그 행동이 징후라고 결정함

교육 기관, 부모, IEP팀의 관계자들이 그 행위가 해당 아동의 장애의 징후에 의한 것이라고 결정을 내리면, 해당 IEP 팀은 반드시:

1. 배치의 변화를 야기한 해당 행동 18개월 이전 기간동안 교육기관이 기능적 행동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기능적 행동 평가를 실시한다. 그리고 해당아동에게 행동 개입을 플랜을 이행하거나

2. 만일 행동 개입 플랜이 이미 개발되었다면, 그 계획을 필요에 따라 검토 그리고 수정한다, 그리고

3. 부모와 교육 기관이 행동 개입의 수정의 일부로 배치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다면, 해당아동을 원래의 학급으로 되돌려 보낸다.

Special Circumstances. 사회환경

학교 담당자는 만약 학생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 한다면, 해당 행동이 아동의 장애의 징후로 결정이 나는 것과 상관 없이 학생을 45일 이상 임시 대안 교육 세팅으로 옮길 수 있다.

1. 학교에서 또는 교육부의 관할 또는 교육 기관하의 학교 기관에서무기를 가지고 다니거나 소지하고 있을 경우

2. 불법 약품들을 사용하거나 알면서 소지하고 있거나, 학교에 있을 동안, 학교 구내에서 또는 교육부의 관할 또는 교육 기관하의 학교 기관에서 규제 물질을 팔거나 권유했을 때, 또는

3. 학교, 학교 구내, 또는 교육부의 관할 또는 교육기관의 관할 하에 있는 학교 기능을 하는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육체적 해를 입혔을 때

Definitions*. 정의들*  이 섹션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들을 적용한다.

1. 규제 약물은, schedules I, II, III, IV, 또는 V 규제 약물 조항(21 U.S.C. 812(c)) 섹션 202(c )에 명시되어 있는 약물 또는 다른 물질을 뜻한다.

2. 불법 약물은 규제 약물을 뜻한다; 하지만 자격증이 있는 의료인들의 감독하에 사용되거나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약물 또는 해당 조항하에 또는 다른 연방 법률하에서 권한을 가지고 법적으로 사용하거나 소유하는 약물은 포함하지 않는다.

3 . 심각한 신체 부상은 United States Code의 타이틀 18의1365 섹션의 부속섹션 (h)의 (3)째 문단에 주어진 용어 “심각한 신체 부상” 이란 용어가 의미하는 대로 이다.

4. 무기는United States Code 타이틀 18의 섹션 930의 첫 번째 부속섹션 (g)의 문장 (2) 아래 쓰여진 “위험한 무기”라는 용어의 의미이다.

**Appeal. 항소**

징계조치 또는 장애의 징후에 대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장애아의 부모, 또는 해당아동이 현재의 배치를 유지하면 해당 학생 또는 다른 사람의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믿는 LEA는 적법 과정 심리를 요청하여 결정에 항소할 수 있다.

Authority of Hearing Officer*.*  청문회(심리) 담당지의 권한

청문회 담당자는 이 섹션하에 있는 항소와 관련하여 경청하고 결정을 내린다.

청문담당자는 학생이 학급에서 철수된 것이 징계 규정에 위반하는 철수였다고 결정하면 해당 아동을 원래의 배치로 되돌려 보낼 수 있다, 또는 해당 아동의 행동이 장애의 징후였다고 결정하거나, 만일 해당 아동을 지금의 배치에 유지하면 해당 아동 또는 다른 사람들이 다치는 결과를 가지고 올 가능 성이 있다고 결정하여 장애를 가진 아동의 배치를 임시 대안 교육 세팅으로 45일 이상 변경하는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는등의 결정을 내린다.

만일 교육 기관이 해당 아동을 원래의 배치로 되돌려 보낸다면 해당 아동 또는 다른 사람들이 다칠수 있다고 믿으면 이 과정은 다시 반복될 것이다.

Expedited Due Process Hearing*.* 신속 적법 절차 청문회

청문회가 요청될 때 마다 분쟁에 참여한 부모 또는 교육 기관에게는 반드시 적법 절차 청문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1. 교육부는 징계조치로 인한 신속 적법 절차 청문회를 열게할 책임이 있다. 이는 청문회가 신청되고 20일(학교 다니는 날짜로)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부모와 교육 기관이 합의 회의를 제외하기로 동의하거나, 또는 중재를 사용하기로 동의하지 않으면, 해결 모임은 반드시 적법 과정 청문 요청 통지를 받은 7일 이내에 열려야 한다. 그리고

3. 적법 과정 청문회는 청문 요청을 받은 15일 이내에 양 측이 만족하는 해결에 도달하지 않는 한 진행될 것이다.

4. 신속 적법 절차 청문회의 결정은 항소가 가능하다.

**Placement During Appeals. 항소 중의 배치**

부모나 교육 기관 중 누가 항소를 하면, 부모와 교육기관이 합의하지 않는 한, 해당 학생은 청문 담당자의 결정 또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어느 것이 먼저 일어나건, 임시 대안 교육 세팅에 남아 있어야 한다.

**Protections for Children Not Determined Eligible for Special Education and Related Services.**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아동들의 보호**

이 책자의 규정에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결정이 된 아동과 학생 행동 규정을 위반한 행동에 관련된 아동은, 만일 교육 기관이 해당 아동이 징계 조치를 야기한 행동 이전에 장애를 가진 아동이였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이 파트에 규정된 보호를 주장할 수 있다.

A. 공공 기관은 만약 징계 조치를 받은 행동이 이전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그 아이는 장애를 가진 아이이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1. 그 아동의 부모가 서면으로 적절한 교육 기관의 관리자 또는 감독관, 또는 자녀의 선생님에게 서면으로 아이가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관심을 표시 하였다면

2. 부모가 자녀의 장애아 여부 평가를 요청하였다면, 또는

3. 그 아동의 선생님 또는 교육기관의 다른 사람이 아동의 행동 패턴에 대한 특정한 관심을 직접적으로 기관의 장애아 교육 디렉터나 기관의 다른 관리자에게 표현한 경우

Exception*.* 예외

만일 아동의 부모가 아동의 평가를 거절하거나 이 파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거절하거나, 해당 아동의 평가 결과가 이 파트 아래에서는 장애를 가진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된다.

Conditions that Apply if No Basis of Knowledge.인식의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조건

1. 만일 공공 기관에서 한 아동이 해당 아동에 대해 징계수단을 적용하기 이전에 장애를 가진 아동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그 아이는 비슷한 행위를 한 정상의 아동들에게 적용되는 징계 조치가 행해질 것이다.

2. 징계 조치 대상이 되는 아동에 대해 징계를 받는 동안 장애아 평가 요청이 있으면, 그 평가는 반드시 신속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평가가 끝날 때 까지, 그 아동은 교육 서비스 없이 정학이나 제명을 할 수 있는 학교 담당자가 결정한 교육 배치 안에 남아 있어야 한다.

3. 교육 기관과 부모가 제공한 정보에 의해 행해진 평가로부터 만일 아동이 장애를 가진 것으로 판명이 되면, 해당 교육 기관은 이 파트에 따라 특수 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그 학생에게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Referral to and Action by Law Enforcement and Judicial Authorities.**

**법 집행과 사법 당국에 의한 추천과 조치**

이 파트의 어떤 것도 장애 아동 이 저지른 범죄 혐의를 기관에 보고하는 것을 금지 하거나 자녀가 저지른 범죄에 연방 및 주 법률 의 적용 과 관련하여 책임을 행사하는 주 법 집행관이나 사법 당국의 법 집행을 금지하지 않는다.

공립 기관의 개인이 법집행관이나 사법 당국에 접촉하여 장애아가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보고할 때 마다, IEP 팀은 해당 아동이 학교 세팅으로 돌아 온 2주 안에 반드시

1. 만일 공립 기관이 아이에게 징계 조치를 적용하기 전에 해당 아동이 장애를 가진 아이인 것을 알지 못했다면, 그 아동은 비슷한 행동을 한 비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징계조치를 받게 된다. 배치의 변경을 초래한 행동 이전 18개월 동안 기능적 행동 평가를 지역 교육청에서 하지 않았다면 기능적 행동 평가를 실시하고 행동 간섭을 플랜을 아동에게 시행한다. 또는

2. 만일 행동 간섭 계획이 이미 계발되었다면, 필요에 따라 행동 간섭 계획을 검토와 수정한다.

Transmittal of Records*.*기록의 송부

(1) 장애아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를 보고하는 학교는 해당 아동의 징계 기록과 특수 교육에 관한 사본들을 보고할 때 받는 기관이 적절한 권위를 가진 기관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송부하여야 한다.

(2) 이 섹션하에서 관련 범죄를 보고하는 기관은 가족 교육 권리와 개인 정보 보호 조항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아동의 징계 기록과 특수 교육 기록의 사본을 송부 할 수 있다.